



서울특별시경찰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신고 철저 협조 요청(서울경찰청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

가. 도로교통법 제52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)

나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시도자치경찰위원회
회의 소관사무) 제1항 제7호

다. 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」 제16조(감사
결과의 심의·의결 및 통보) 제1항

라.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-5359('26. 5. 27.) 서울 ○○경찰서
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통보

3. 위와 관련,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○○경찰서 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
알려드립니다.

【어린이통학버스 관련 ○○경찰서 사무감사시 지적 사항】

-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
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통학버스 안에 상시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·유치원 등에서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함에
있어 차량 임대차계약일과 운행신고 접수일 간 장기간 공백이 있어 미신고 운행이
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됨.

※ ○○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신고 지연으로 인한 미신고운행 의심사례

- 총 50건(초등학교 37건, 유치원 7건, 학원 등 6건)

※ 예: 임대차 계약일 '24. 3. 1., 운행신고 접수일 '24. 9. 24. 등 최대 207일 지연

4. 요청사항

- 학교·유치원·학원 등에서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
운행계약시 지체없이 운행 신고를 하고, 신고필증 수령 후 운행하여 미신고운행 사례가
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,
- 차량 도색·구조 변경·보험 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준비로 인해 신고가 지연
되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예시) : 구조변경 및 검사 대기로 인한 지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 일자 등
소명자료 제출. 끝.

서울특별시경찰청장



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,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경위 박진우 경감 박형호 경정 이진수 총경 배영찬 전결 2026. 6. 19.

협조자

시행 교통안전과-9087 (2026. 6. 19.) 접수

우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,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/ http://www.smpa.go.kr
(내자동)

전화번호 02-700-5053 팩스번호 02-700-5053 / jjinoo8755@police.go.kr / 비공개(5)